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41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고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해당 지침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면철도(트램) 부문 신설

노면철도(트램)를 도로, 철도와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사업 특성을 반영한 수요예측, 비용·편익 산정방법 제시

나. 편익 항목 개선

사업유형별 적정 편익산정을 위해 편익항목을 기존의 직접·간접편익을 공통·사업특수 편익으로 개편하고, 신규편익을 추가 반영

다. 기초자료 현행화 및 타당성분석 개선

통계자료 등 타당성분석 기초자료를 현행화하고, 사회적 할인율을 기존 5.5%에서 4.5%로 조정하며, 철도화물 수요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법 반영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787, 3790(팩스 044-201-5579)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